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737호
- 나. 제 안 자 : 김원태 의원(찬성자 18명)
- 다. 제 안 일 : 2025년 5월 26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디자인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금 미지급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함
- 이에 디자인 지원사업에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을 명시하여 디자인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에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및 경비 지원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제6호 신설 및 제6조제2항 개정)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디자인 개발 및 납품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지원사업에 ‘보험가입 지원’을 명시하고(안 제6조제1항제6호),
-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제한적인 보조 방식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제2항)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사업)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가입 지원</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사업 추진을 위해- -----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나. 검토 내용

“개정 필요성”

- ‘디자인전문회사’는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¹⁾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의미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의 수는 15,786개이며, 서울시는 5,959개(’25.3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4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요건(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회사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 업체 대상으로 신고 제도 운영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 인력 1인 이상(단, 종합디자인회사의 경우 총 3인 이상)

매출액: 기준 없음(단, 종합디자인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년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

*2017.10월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고요건 중 전문 인력과 매출액 요건 완화

1. 신고서/사업자등록증(종목에 '디자인' 표기)

2. 법인 사업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제출

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은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디자인산업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투자대비 매출 효과가 높음. '24.10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실제 기술개발 대비 약 14.4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의 경제적 가치도 2012년 약 69조 원에서 2022년 178조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²⁾



- 서울시는 전국 디자인산업의 중심지로, 2022년 기준 디자인 활용률은 45.7%(전국 37.3%)로 가장 높고, 산업 규모는 8조 9,291억 원으로 전국 디자인산업의 46.3%를 차지함³⁾
-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핵심 주체인 '디자인전문회사'의 평균 매출은 4억 원, 평균 직원 수는 2.48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영세한 구조⁴⁾를 갖고 있으며, 2022년 실시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디자인전문회사'의 22.7%가 불공정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 유형은 용역대금 미지급(61.7%), 디자인 도용(18.3%), 일방적 계약 해지(16.7%) 등으로, 업체당 평균 7건, 약

2) "디자인은 미래먹거리"...서울시 '디자인산업 5개년 계획' 발표(이투데이, 2024.10.16.)

3) 2024 서울시 디자인산업통계조사

4)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 기자발표회 자료(서울특별시, 2024)

9,670만 원 규모에 달하며 업계 전체 피해는 약 2,400억 원으로 추산됨

- 피해기업의 54.7%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66.4%가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41.2%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함⁵⁾
- 이처럼 ‘디자인전문회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디자인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함

“개정안 검토”

(1)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6호)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은 서울시가 디자인산업을 진흥·육성·지원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

5) 2021년도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09.) 중

-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주요 분쟁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 과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이며 피해 발생 시 전문가/전문기관에 의뢰(65.2%, 1+2순위 기준)하여 대처하는 비율이 높으나 피해를 감수(54.7%, 1+2순위 기준) 하는 사업체 비율도 높음
- **피해 감수하는 이유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감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 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파트너 간 관계보다는 사업체의 전문성과 공정한 입찰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선발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당사자 간 대면 없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대행 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으로는 지원 정책(66.4%)과 디자인 용역표준 계약서 및 대가기준 활용 확대(56.9%)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지원 정책의 세부 의견으로는 **대응 절차 방법 등 법률서비스 지원(41.2%)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소규모 사업체는 피해 경험 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피해 발생 시 법률적 부분을 자문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마케팅 및 판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지원’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보험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가입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이는 2024년 서울시가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치이며 관련 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 이처럼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편성과 법적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사업항목 명시 및 지원범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불공정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체계적으로 지원

6) ‘한국의 이케아 키운다’...서울시, 디자인산업에 5년간 1723억 투입(중앙뉴스, 2024.10.16.)
 영세 디자인기업들을 위한 국내 최초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을 도입한다.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와 신한EZ화재보험이 공동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은 시제품 개발중 파손 및 도난이나 디자인제품 납품 실패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5천만원 상당 제품 제작시 3%에 달하는 150만원(본인105만원+市 45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만일의 사태 발생시 60%에 달하는 3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우선 지원⁷⁾하여 법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로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2)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업을 추진하는

7) 「디자인기업 안심보험(안)」 추진(디자인산업담당관 내부자료)

□ 추진 근거 및 경위

- 디자인산업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4. 10월)
 - 핵심 4대 사업 중 **2.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출시**
- 유관기관(대한손해보험협회, 금감원) 자문 및 실무 검토회의 ('24. 9월 ~ '25. 5월)

□ 보험상품 구성(안)

- 보장내용 : **디자인전문회사가 각종 법적 분쟁 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료등 법률비용**
 - 디자인 계약의 내용의 위반이나 미준수, 거래대금의 지급 관련
 - IP 관련 권리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
- 가입대상 :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6,000여개 업체('25. 3월말 기준)
- 보험료 : 업체당 5만원 (서울시가 일괄 납부)
- 가입기간 : 1년 이내
- 보장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지원대상, 심의, 정산 등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는 제한적 방식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 사업 추진을 위해-----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른 조례8)에서도 직접적인 보조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⑤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 안정과 영세 디자인기업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로서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조례 운영의 실현 가능성, 행정 집행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디자인전문회사의 보험 가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디자인전문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피해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자인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을 위한 실행 기반을 조례 상으로 정비하고 향후 단계적 시행과 예산 편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를 확보하는 취지에서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방식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산업의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여 서울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로서, 서울시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조례 운영의 실현 가능성, 행정 집행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붙임]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6조(지원사업)제2항	○	디자인 전문회사 대상으로 법률비용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보험상품 운영 시 비용 발생 ⇒총 1,750,000천원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25년 3월 기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신고회사(안 제6조제2항)

나. 전제

- (보험료) 기업당 50천원(가입기간 1년, 보상한도 최대 1,000만원)
※2025,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내부자료
- (사업 홍보비) 50,000천원
※2025,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내부자료
- (지원대상)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신고회사 약 6,000개사로 추정
※'25년 3월 기준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750,000천원 (연평균 3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총사업 비용(안 제6조제2항)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소계(a)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1) 보험료와 사업 홍보비용을 더한 금액

4. 덧붙이는 의견 : 본 추정액은 서울시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신고회사를 약 6,000개사로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6조제2항)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750,000천원

나. 총사업 비용 = 350,000천원

$$\begin{aligned} &= (1\text{기업당 소요되는 보험료}(P) \times \text{지원대상}(Q)) + \text{사업 홍보비}(P) \\ &= (50\text{천원} \times 6,000\text{개}) + 50,000\text{천원} \end{aligned}$$

다. 추계방식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개수와 사업 홍보비를 검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